증평군 Jeung Pyeong

www.jp.go.kr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576호 2021년 1월 10일(금)

훈 령

○ 증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훈령 ---------- 2

회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1,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0년 1월 1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훈령 제135호

증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훈령

증평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증평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실시 계획의 수립·시행)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이하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②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을 조직 내에 적극 홍보하여 소속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의 구성) ① 고충상담창구는 고충상담창구장 1명과 4명 이상의 고충상담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상담원은 남성과 여성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사 또는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2.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원

3.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상담 등 신청·접수)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고충상담창구에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의 신청은 피해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이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공

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조사 제외 또는 중지) 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상담창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건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처리 중인 경우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조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12조(조사결과 보고) ① 고충상담창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증평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3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경우에는 군수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9조(심의결과 보고 등)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

군수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도 알려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2. 제21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권 등을 침해한 경우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불이익조치 금지) 군수(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상담이나 협력 등을 이유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한 경우

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성희롱·성폭력 상담 등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낼 수 있다.

제23조(피해자 보호 조치 등)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혐의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및 지원)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팀장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또는 제3자 신청 시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그 밖의 사항(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따로 붙임					